

개인의료정보 활용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한주*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 |
| II.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 V. 결론: 우리 의료정보보호법제의 발전 방향 |
| III. 중국의 의료 법제와 관련 쟁점 | |

| 논문요약 |

빅데이터 시대에 의료정보의 활용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발전은 생명유지와 연장, 건강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염원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활용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침해될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비교해서 의료정보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가명정보’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 그중에서 특히 의료정보 - 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3년 3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였다. 이 권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아직 가명정보의 활용이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활용적 측면인 가명정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규정과,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의료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하여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 주제어: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의료정보, 헬스케어

I. 서론

오늘날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 Chain) 등이 주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Big Data)를 수집·저장·분석·관리하여 우리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빅데이터 시대에 의료정보의 활용은 단순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진보는 생명 유지와 연장, 건강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염원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의학계 또는 산업계는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활용의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침해될 때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비교해서 의료정보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기에 활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서 ‘가명정보’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규정했는데(제2조 제1호 다목), 이 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 그중에서 특히 의료정보 - 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가 원상태로 복원될 우려가 있고, 만약 이렇게 복원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된

다면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특히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기술적으로 복원할 경우 정보주체인 환자에게 미칠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EU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제20조에 전송요구권 도입 이후 우리도 오랜 기간 논의해 오다가 2023년 3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규정하였다.¹⁾ 이 권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게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이데이터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정보주체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환자가 본인의 의료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경우, 지금까지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교해서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명정보 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규정으로 지금까지보다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아직 가명정보의 활용이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나타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런 논의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침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활용적 측면의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규정을 살펴보면서 의료정보의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Ⅱ),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의료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며(Ⅲ),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려고(Ⅳ) 한다.

1) 해당 조문 중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제35조의4)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5조의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5조의3)의 내용은 아직 시행 미정이다.

Ⅱ.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1. 가명정보의 의의

(1) 개념

과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는데, 2020년 개정 법률은 앞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중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를 판단하는 근거로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고(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목), 이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의2)]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않는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의 개념으로 새로 포함했다.

기존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추상적이어서 개인정보 수집자나 처리자에 따라서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김근령·이대회 2018, 66), 이에 대해서 좀 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가명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더라도 추가 정보의 사용 또는 결합으로 특정 개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수집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더라도 더 이상 특정한 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58조의2), 익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한주 2020, 118).

(2)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확대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 ‘과학적 연구’의 개념을 신설하여,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로 정의하였다(같은 법 제2조 제8호). 그리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들도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특정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같은 법 제28조의2). 이것은 ‘과학적 연구’의 개념을 새로 추가하면서 동시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에서 상업적인 목적의 과학연구를 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명처리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의3 제1항·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서의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 제한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의4).

이 외에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 제한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의5).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3)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원래의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고 폭넓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음의 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원래의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합리적’의 주체는 누구이고,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며,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부주체 사이에 서로 견해가 다른 경우에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가 침해되더라도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불이익은 현재 발생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미래의 불이익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등의 문제도 있다. 셋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무엇이고, 만약 개인정보처리자가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이한주 2020, 121).

2. 의료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무엇보다도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이다. 당연히 타인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째, 개인정보의 수집(제15조 제1항 제1호), 민감정보의 처리(제23조 제1항 제1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4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여야 하고, 둘째,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제15조 제1항 제4호) 처리되는 개인정보여야 하며, 셋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제15조 제1항 제2호)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제15조 제1항 제3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제23조 제1항 제2호) 또는 고유식별정보(제24조 제1항 제2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여야 한다.

이와 같이, 민감정보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정보주체인 환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 의료기관에게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어야 하므로(제35조의2 제1항 제2호), 모든 개인의료정보가 전송 요청에 해당하는 정보라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 규정과 비교해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생성한 추론한 데이터(Inferred Data)와 2차 데이터(Secondary Data)는 전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 중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에 대한 문진·검사·진료·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인 등 의료기관종사자가 분석·가공한 정보의 상당수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개인의료정보 중에서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될 정보는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여야 한다(제35조의2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제2항의 내용 중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김강한·이정현 2023, 54-55).

(2) 정보주체 권리의 범위와 제한 등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제3자에게도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전송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의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35조의2 제2항). 여기서 제3자는, 첫째, 제35조의3 제1항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둘째,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제35조의2 제3항). 그리고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의 비밀유지의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제35조의2 제4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거절 또는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제35조의2 제6항).

한편, 정보주체는 본인에게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했던 요구를 철회할 수 있고(제35조의2 제5항),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5조의2 제7항). 이런 규정 외에도 전송요구 상대방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

2)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제35조의2 제8항).

Ⅲ. 중국의 의료 법제와 관련 쟁점

1.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관

중국은 과거에 다양한 법률과 규범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각 규정하였고,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고, 2012년에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加強網絡信息保護的決定)」을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후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2017년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2021년 데이터 보안과 시장화를 위한 ‘데이터안전법’(2021년), 2021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등을 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상당 부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1) 네트워크안전법(2017년)

네트워크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網絡安全法)의 목적은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 주권과 국가 안보,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 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법은 전체 7장 총 79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정보통신보안 관련 법률로서 인터넷 공간의 주권과 인터넷 상품·서비스 제공자의 안전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수립했으며, 핵심 정보 인프라의 안전 보호와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규칙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중국 내 네트워크 사업자, 핵심 정보 인프라

라 시설 운영자 등이다. 적용 범위는 중국 내에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안전의 감독 관리이다. 법의 주요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은 제4장 네트워크 정보안전(網絡信息安全)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73-74).

(2) 데이터안전법(2021년)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데이터안전법(中華人民共和國數據安全法)’ 제정을 서둘렀으며, 이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5개 항목의 수정을 거친 후, 2021년 6월 1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켜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체 7장 총 5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인, 기업, 정부의 데이터 보호의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야별로 데이터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중요 데이터 보호 목록을 작성하여 특별 보호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데이터 안전 위험관리 제도, 비상 대응 제도, 안전심사 제도 등의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데이터를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초 자원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사회적 공익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보호 대상의 범위와 분야는 광범위하다. 그리고 적용 범위를 중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데이터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전, 공공이익 또는 중국 국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때도 적용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71-73).

(3)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개인정보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信息保護法)은 기존의 다양한 법률, 법규에서 보장하던 개인정보 보호를 일반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2021년 8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어 당일 공

표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전체 8장 총 74개조로 구성되었는데, 개인정보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객관적 요구를 한층 강화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양호한 생태계를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현실적 수요를 수용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디지털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법은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직책을 명확히 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제45조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서 정보주체는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고(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처리자 간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상우 2021, 10-13). 우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의료정보 관련 법규정과 의료 빅데이터

(1) 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중국은 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국기본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中華人民共和國基本医療衛生与健康促進法)」을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정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다.

2018년 제정한 「정부정보공개조례(政府信息公開條例)」는 중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이 조례는 행정기관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데 공정·공평·편민(便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정확하게 정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기밀, 상업기밀과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예외적인 원칙도 있다. 특히 정부정보공개주체에 행정기관, 공공관리기관 이외에 국민이

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사업부문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의료위생을 담당하는 기관도 포함된다(『법률신문』 2007/05/03).

이 조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정보의 자유화와 자원의 공유, 정보사회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정보는 다른 정보와 비교하여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물론 조례에서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고, 원칙적으로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육소영·황선영 2022, 33-34).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민감개인정보’는 이미 누설되었거나 불법으로 사용되어서 자연인의 인격적 존엄성에 해를 끼치거나 신변·재산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 정의한다. 민감개인정보는 생체인식·종교 및 신앙·특정신분·의료 건강·금융 계좌·행적 등의 정보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제28조).³⁾ 이 중에서 생체인식, 의료 건강과 관련된 것이 의료정보에 해당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의료정보의 활용

중국은 2010년 전자의무기록(EMR) 업무와 관련된 「전자병력기본규범(電子病歷基本規範)」이 발표되었고, 이후 이것을 수정·보완한 「전자병력응용관리규범(電子病歷應用管理規範)」이 현재 시행 중이다. 전자병력기본규범에 의하면, 전자병력은 의료인이 의료활동 과정에서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문자, 부호, 도표, 도형, 데이터, 영상 등을 디지털화한 정보이고, 저장·관리·전송·재현할 수 있는 의료기록을 말한다(제3조). 전자병력시스템은 반드시 환자를 위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성명, 성별, 출생일자, 민족, 혼인여부, 직업, 주소, 유효한 신분증번호, 사회보장번호 또는 의료보험번호,

3) 2017년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보보안기술 개인정보보호규범(信息安全技術個人信息安全規範)」에서, 의료·건강 정보는 개인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인 개인건강 생리정보로 분류될 수 있고, 개인건강상태와 관련된 단순 측정 정보인 체중·신장·폐활량 등은 개인정보로, 출산정보·병력·치료기록 등은 민감개인정보로 구분된다(육소영·황선영 2022, 48).

전화번호 등을 포함)를 만들고, 유일한 식별번호를 수여하고 환자의 의료기록과 상응하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 하며(제11조), 반드시 국가정보안전등급 보호 제도와 표준을 부합해야 하며, 전자병력의 변조, 위조, 은닉, 강탈, 절취 및 훼손을 엄격히 금지한다(제13조)(육소영·황선영 2022, 38).

(3) 의료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國家衛生和計劃生育委員會)는 의료빅데이터에 대하여 “개인의 건강을 포함하여 의료서비스, 질병의 예방과 통제, 건강보장 및 식품안전, 건강관리 등으로 수집과 저장된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중국에서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개혁은 의료갈등의 개선, 의료기관의 서비스 효율성 향상, 환자의 본인 건강관리에 중요한 방안이 되었고, 일반 의료서비스, 공중보건, 임상연구, 의료 거버넌스, 의료행정 관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의료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경제성장으로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고, 고령화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의료와 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의료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고, 별도의 독립된 입법이 필요하다.

의료빅데이터는 빅데이터가 가지는 4가지 특징[4V, Volume(규모), Variety(다양성), Velocity(고속), Value(가치)] 외에 순차성, 프라이버시성, 불완전성 등 의료분야 고유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순차성은 환자의 치료와 질병의 발병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의료검사의 과정과 이미지는 모두 시간의 흐름대로 수집, 저장되며, 모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성을 가지게 된다. 또한, 환자의 의료빅데이터는 고도의 프라이버시성을 가지고, 환자의 병력과 일반 정보가 누출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의료빅데이터는 불완전성을 가지는데, 의료정보는 대부분 수동으로 기록되므로 기록자에 따라서 데이터 기록의 결함과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정보의 불완전한 수집과 처리로 의료정보들이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김정진 2022, 179-181).

3. 코로나19 이후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1) 코로나19 이후 의료정보 활용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중국 중앙인터넷 안전과 정보화위원회 관공실(中共中央網絡安全和信息化委員會辦公室)은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동 예방 및 통제 지원에 관한 통지(關於做好個人信息保護利用大數據支撐聯防聯控工作的通知)」를 공표했다. 이 통지의 서문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예방과 통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동 예방과 통제 사업을 지지하면서 중앙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있다.

이 통지의 주요 내용은, 우선 각 지역의 각 부서는 개인정보보호작업을 고도로 중시해야 하고, 「네트워크안전법」, 「전염병 방지법」, 「긴급 공공위생 사건 응급 조례」에 근거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또는 개인도 전염병 발생의 방제·질병 퇴치를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동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국가 표준의 ‘개인정보보안규범’을 참고하여 최소 범위의 원칙을 지키도록 했고, 원칙적으로 수집 대상은 확진자·의심자·밀접 접촉자 등 중요 인원으로 제한하며, 특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전염병 예방과 통제, 질병 예방을 위해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름·나이·신분증 번호·전화번호·집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공동 예방과 통제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거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기업은 관련 부서의 지도로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진자·의심자·밀접접촉자 등 중요 인원의 유동 상황 분석과 예측행위를 할 수 있고, 공동 예방과 통제 작업을 위해서 빅데이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육소영·황선영 2022, 48-49).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 지방정부는 IT 기업과 공동으로 건강신고서 작

성을 위한 다양한 건강코드를 개발하였고, 공공관리부문은 이를 근거하여 개인의 위험등급을 판단한다. 한편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2020년 3월에 데이터화 방역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정보 문제를 규범화하기 위해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함께 「정보 안전 기술 - 개인정보 안전규범(信息安全技術 个人信息安全規範)」을 제정하여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건강코드는 위챗을 통해 스캔하면 얻을 수 있는 2차원 코드인데, 생성은 개인 신고, 배경 분석, 말단 코드 전송의 3단계로 구분된다. 2020년 2월 선진에서 처음으로 건강코드를 출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사용했는데, 정부의 관리와 통제, 개인 출행에 중요한 데이터화 도구를 제공하였다. 종이등록과 분산코드의 스캔등록과 비교해서 건강코드는 중복 등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의 감염병 발생 위험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어서 정부 감독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위챗(wechat) 등의 ‘건강코드’ 앱을 통해서 개인신분정보, 위치정보, 의학관찰정보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 수집 주체, 보관방법, 제3자 전달, 정보의 보관 기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양 2021, 40-41).

(2) 위생관리 행정기관의 권한 확대

현재 중국 행정기관은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DB를 구축했는데, 갑작스러운 공중위생 위협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태의 긴급성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의료정보 포함)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 활용의 정도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개인은 알 권리가 있으므로 민법전 제1035조(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조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반드시 합법, 정당, 필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과도하게 처리하면 아니 되며, 1) 해당 자연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제외), 2) 정보 처리의 규칙을 공개해야 하며, 3) 정보 처리의 목적, 방식과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4)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과 쌍방의 약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

고 있다. 그런데도 ‘전염병 예방·치료법’과 ‘돌발사건대응법’은 공중건강정보, 특히 공중위생위험기관에게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해서 위생관리부문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특히 건강상황이나 위치정보 등의 정보 수집과 확인은 행정기관이 감염병 확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예방과 통제 조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의 과도한 수집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이양 2021, 43-44).

(3) 개인정보의 계속된 유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행정기관의 의무가 일부 면제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비록 민법전 제1036조 제3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공공의 이익 또는 해당 자연인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시행하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자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지만, 행정기관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민법전 제1038조는 정보처리자는 그가 수집, 저장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변조하면 안 되고, 자연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불법으로 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이양 2021, 44-47).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행정기관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발생했는데, 이후에 정보주체들은 대부분 사이버상에서 여러 유형의 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여전히 당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인 불안감을 조장하고 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중국의 빅데이터 방역은 단계적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고, 지역별로 다양한 건강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항저우(杭州)는 단계적 변화 건강코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

사용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항저우가 단계적 변화 건강코드를 발표하려던 시기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것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 의료정보 활용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의료정보의 보호와 의료정보처리자 등의 책임

① 의료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중국에는 아직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민법전 제 1225조는 의료기관 및 그 의무인력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입원일지(住院志), 의사처방전, 검사보고서, 수술 및 마취기록, 병리(病理) 자료, 간호기록(護理記畧) 등 병력자료를 작성하고 선량하게 보관해야 하고, 환자가 앞에서 규정하는 병력 자료의 열람, 복사를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적절하게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1226조는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력은 반드시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보호해야 하고, 환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그의 병력자료를 공개한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인의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염병 예방·치료법(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 제12조는 중국 내의 모든 기관과 개인은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구의 전염병 조사, 검사, 검체 채취, 격리, 치료 등의 예방통제 조치를 수용하고 관련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하고,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자료를 공개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위생 행정부서 등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관리 또는 예방통제조치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침해받은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 이 규정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경우에 국민은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의 조치를 따르고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기관들은 이런 정보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2조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의심환자에게 의료지원, 현장구조 및 치료를 제공하고 진료기록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사전검사와 분류 체계를 실시해야 하고,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 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분류 지점으로 안내하여 초기 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의료기관이 상응하는 치료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치료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에 환자와 진료기록사본을 이송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다고 하였다.⁵⁾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의심환자에게 의료지원, 치료 등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초기에 분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급의료기관이나 조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 第十二條

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內的一切單位和個人，必須接受疾病預防控制機構、醫療機構有關傳染病的調查、檢驗、採集樣本、隔離治療等預防、控制措施，如實提供有關情況。疾病預防控制機構、醫療機構不得洩露涉及個人隱私的有關信息、資料。衛生行政部門以及其他有關部門、疾病預防控制機構和醫療機構因違法實施行政管理或者預防、控制措施，侵犯單位和個人合法權益的，有關單位和個人可以依法申請行政復議或者提起訴訟。

5) 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 第五十二條

醫療機構應當對傳染病病人或者疑似傳染病病人提供醫療救護、現場救援和接診治療，書寫病歷記錄以及其他有關資料，並妥善保管。醫療機構應當實行傳染病預檢、分診制度；對傳染病病人、疑似傳染病病人，應當引導至相對隔離的分診點進行初診。醫療機構不具備相應救治能力的，應當將患者及其病歷記錄複印件一併轉至具備相應救治能力的醫療機構。具體辦法由國務院衛生行政部門規定。

②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책임 강조

그리고 전염병 예방·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각각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8조는 질병예방통제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1) 법에 따라 전염병 감시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법에 따라 전염병에 대한 보고 및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염병에 대해 은폐, 허위 보고 또는 보고를 지연하는 행위, 3) 전염병 유행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거나 전염병 유행 정보 및 전염병 보고를 신속하게 분석, 조사, 검증하지 않는 경우, 4) 전염병 유행이 발견된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관자, 감염병 의심 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련 개인 정보 및 자료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의 다섯 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금 이상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통지문을 회람하는데,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며, 처벌에는 강등, 면직, 제명 등이 포함되며, 관련 책임자의 직업 자격증은 취소될 수 있다. 법에 의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였다.⁶⁾ 이 규정은 질병예방통제기관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때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69조는 의료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1) 규정에 따라 담당 구역 내에서 해당 기관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업무, 병원 감염 통제 업무, 전염병 예방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전염병 유행을 보고하

6) 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 第六十八條

疾病預防控制機構違反本法規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縣級以上人民政府衛生行政部門責令限期改正，通報批評，給予警告；對負有責任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降級、撤職、開除的處分，並可以依法吊銷有關責任人員的執業證書；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一)未依法履行傳染病監測職責的；

(二)未依法履行傳染病疫情報告、通報職責，或者隱瞞、謊報、緩報傳染病疫情的；

(三)未主動收集傳染病疫情信息，或者對傳染病疫情信息和疫情報告未及時進行分析、調查、核實的；

(四)發現傳染病疫情時，未依據職責及時採取本法規定的措施的；

(五)故意洩露傳染病病人、病原攜帶者、疑似傳染病病人、密切接觸者涉及個人隱私的有關信息、資料的。

지 않거나, 전염병을 은폐, 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지연하는 행위, 3) 전염병 유행이 발견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의료지원, 현장 구조, 입원 및 진료 의뢰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 의뢰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장치 내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품목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의료 장비를 소독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한 번 사용한 의료 장비를 다시 사용하기 전에 파기하지 않은 경우, 6) 치료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의료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7)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관자, 감염병 의심 환자 및 밀접접촉자의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헌급 이상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발송하며, 감염병의 확산, 전염병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책임 감독자는 직원을 처벌하며,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강등, 해고 또는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며, 직원은 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였다.⁷⁾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 행정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지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양 2021, 47-48).

7) 中華人民共和國傳染病防治法 第六十九條

医療机构違反本法規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縣級以上人民政府衛生行政部門責令改正，通報批評，給予警告；造成傳染病傳播、流行或者其他嚴重后果的，對負有責任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降級、撤職、開除的處分，並可以依法吊銷有關責任人員的執業證書；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 (一)未按照規定承擔本單位的傳染病預防、控制工作、醫院感染控制任務和責任區域內的傳染病預防工作的；
- (二)未按照規定報告傳染病疫情，或者隱瞞、謊報、緩報傳染病疫情的；
- (三)發現傳染病疫情時，未按照規定對傳染病病人、疑似傳染病病人提供醫療救護、現場救援、接診、轉診的，或者拒絕接受轉診的；
- (四)未按照規定對本單位內被傳染病病原體污染的場所、物品以及醫療廢物實施消毒或者無害化處置的；
- (五)未按照規定對醫療器械進行消毒，或者對按照規定一次使用的醫療器具未予銷毀，再次使用的；
- (六)在醫療救治過程中未按照規定保管醫學記錄資料的；
- (七)故意洩露傳染病病人、病原攜帶者、疑似傳染病病人、密切接觸者涉及個人隱私的有關信息、資料的。

IV.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시사점

1. 과도한 개인의료정보 수집·이용 억제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코드를 활성화하면서 과도한 개인의료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개인의료정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디지털 또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하는 헬스케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무척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환자 중심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한계를 가졌던 여러 이유 중에서 의료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가 정보주체인 환자에게 대단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수집했었고,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부여하기도 했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위기는 코로나19의 상황 때보다 훨씬 발전적이고 성숙한 태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그중에서 특히 의료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이 무분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의료정보의 활용 확대와 정보처리자의 엄격한 책임 부과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개별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기본의료위생과 건강 촉진법’, ‘민법전’, ‘전염병 예방·치료법’ 등을 통해서 해당 영역에서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우리보다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서 앞으로 개인의료정보 활용의 정도와 범위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우리도 중국처럼 활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막연

한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외국과 비교해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조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진정으로 의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지, 활용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를 유출할 때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중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68조, 제69조에 따라서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제68조는, 질병예방통제기관이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감염병 의심 환자 및 밀접 접촉자의 관련 개인정보 및 자료를 고의로 유출하는 경우 등에, 유출자는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등을 할 수 있고, 관련 책임자의 직업자격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제69조는 의료기관이 위와 같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등에,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강등, 해고 또는 제명 처분을 받도록 하며, 직원은 법에 따라 해고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우리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서 의료인, 개인정보처리자 등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때 이에 대한 처벌 규정들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재발방지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국민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뉴스투데이』 2023/04/18). 특히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처리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너무 과도한 징계, 처벌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개인정보, 특히 의료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보 활용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을 통해서 적절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가명정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문제점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

송요구권' 규정을 통해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보 활용의 범위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명정보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의 규정은 EU GDPR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것들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

첫째, 가명정보의 처리의 목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상업적인 목적의 연구도 포함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는 이러한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일반 개인정보 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념, 활용범위 등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도,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니어야 하므로, 개인의료정보 중에서 전송 요청에 해당하는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송요구권의 원래 취지라면 개인의료정보도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전송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전송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러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하려면, 가명정보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5조의3). 그러나 첫 번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명정보의 처리목적,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기관이 의료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오늘날의 기술 수준으로 가명처리된 의료정보를 복원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정보주체가 의료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때 이 정보가 유출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직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V. 결론: 우리 의료정보보호법제의 발전 방향

1. 정보주체인 환자의 권리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의료체계는 반드시 변해야 한다. 물론 의료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고 정보주체인 환자에게 본인의 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것은 의료정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금까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국민이 헌법상 보장되는 보건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 두 가지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분야의 발전은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선호와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확보 등과 직접 관련 있으므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의료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아직 사회 제반 시설이 미비하고 경제적 여건이 완비되지 못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시행하지 못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는 단순히 의료정보 활용의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시설의 확충과 제도의 완비는 국가와 의료의료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다. 국민은 생명의 유지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2. 국가의 거시적인 비전 제시

국가는 국민에게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하면서 거시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국가는 지금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의료정책, 건강보험, 보건 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 체계적·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가명정보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큰 목표에도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는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지속적이고 거시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3. 의료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위한 제도 마련

오늘날 의료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특수한 분야인 의료 영역과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의료인은 의료적 전문성과 함께 높은 수준의 기술적·과학적 전문성도 동시에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의료분야의 전문인력과 기술적·과학적 분야의 전문인력이 함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관련 법제도 구축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의료기관 사이에 협치도 필요하다.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할 때, 환자의

생명 유지와 건강의 회복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예상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과의 계획과 정책이 서로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강한·이정현 (2023).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의 실효적 보장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 제24권. 제2호, pp. 35-77.
- 김정진 (2022). “중국 의료빅데이터의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에 관한 고찰.” 『의생명과학과 법』. 제28호, pp. 177-201.
- 육소영·황선영 (2022).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법제연구: 이용활성화라는 관점에서 한국법과 중국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國際去來와 法』. 제37호, pp. 27-65.
- 이상우 (2021).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KISO 저널』. 제45호, pp. 9-14.
- 이 양 (2021). “중국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코로나 대응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pp. 33-52.
- 이준복 (2021).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pp. 67-99.
- 이한주 (2020).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통한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 가능성의 법적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pp. 97-127.
- 장은정 (2023). “중국의 디지털 보호주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제194권. 제3호, pp. 195-226.
- 정보은·김진형 (2022). “중국의 ‘데이터 3법’ 제정과 개인정보 보호 2.0시대에 대한 의미 고찰.”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3호, pp. 87-119.

2. 기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1).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현황 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내 정보 줄줄 새는데... 스파이망이 처벌에 기업은 ‘쉬쉬’.” 『이뉴스투데이』. 2023년 4월 18일.
- “중국 ‘정부정보공개조례’의 제정과 그 의의.” 『법률신문』. 2007년 5월 3일.

| 논문투고일 : 2023년 08월 17일 |

| 논문심사일 : 2023년 08월 21일 |

| 게재확정일 : 2023년 09월 06일 |

| ABSTRACT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the Utilization
Possibility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Focusing on Korea and China**

Lee, Han Joo

(Korean Medico-legal Institute Senior Researcher)

In the era of big data, the medical and industrial world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utilize medical information based on various technologies.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has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use of information to pioneer new industrial fields in the era of great change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compared to general personal information, the need for protection is required at a high level in that the degree of damage to the information subject is much greater in case of infrin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For this reas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medical information are often perceived as contradictory or difficult to coexist like two sides of a coin.

In February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revised, and through this, the contents of ‘pseudonymized information’ were newly established. This is defined as ‘information that cannot identify a specific individual without the use or combination of additional information to restore personal information to its original state by pseudonymizing it’.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seudonymous information can be technically restored as personal information, and in this case, if an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ccurs, an issue may be raised about how to solve it. In particular, when pseudonymized medical information is restored, it can cause serious infringement on government entities.

On the other hand, Korea has been discussing for a long tim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in Article 20 of the GDPR of the EU, and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newly regulated with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2023. This right can request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at hold their personal information to transfer that information to another place, which is one of the cor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necessary to implement My Data. However, if the patient, the subject of information, requests to transmit his or her medical information to another institution, a problem of information leakage may occur.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provisions of pseudonymous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request personal information transmission in terms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in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similar contents in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ry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our law.

- Key wor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hina's Three Digital Laws, Person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Healthcare